## ⊙ 법무부공고제2011-168호

「법원조직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8일

법무부장관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(안)입법예고

## 1.개정이유

- ○「국적법」일부 개정(법률 제10275호,2010.5.4.)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(제11조의2제1항)되며,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(제11조의2제2항)
- 법관 결격 사유를 정하는 법원조직법 제43조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임용결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,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공무원임용령」또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 처우를 받는 현행 국적법 규정상 법관 임용에 제한이 없음
- 복수국적자가 재판업무를 담당하거나,재판업무의 보조,등기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들의 법관 또는 법원 직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「국적법」일부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주요내용

가.법관 임용결격사유에 "국적법」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"추가(안 제43조)

- 1)「국적법」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으로 처우를 하는 현행「국적법」규정상 법관 임용에 제한이 없음
- 2)법관은 사법기능의 특성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측면에서 외국국적을 보유하는 자의 임용은 부적절함

나.법원 직원의 임용에 "'국적법」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법원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"추가(안 제53조)

1)「국적법」일부 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내국인으로 처우를 하는 현행「국적법」규정상 법원 직원 임용에 제한이 없으며,법원 직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는「국가공무원법」적용 2)법원 직원 역시 재판업무의 보조,등기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므로 복수국적자의 임용은 부적절함 3.의견제출

이 개정법률(안)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(참조 :검찰과장,FAX 3480-3089,전화 503-7047~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

가.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의견과 그 이유) 나.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주소,전화번호.

법령안

첨부파일없음

규제영향분석서

첨부파일없음

참고·설명자료(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등)

첨부파일없음